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0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박은정
김준형 · 차규근 · 신장식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이광희 · 이수진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생 략)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4항----- ----- -----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u>

④ (생략)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u>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4항----- ----- ----- --.
---	---